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재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 : 최재란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경기문, 김규남,
김기덕, 김영옥, 김용일,
김원중, 김인제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
민병주, 박강산, 박 석,
박승진, 박영한, 박유진,
박철성, 박환희, 봉양순,
소영철, 송경택, 송도호,
송재혁, 아이수루, 유만희,
유정인, 유정희, 윤영희,
이민석, 이민옥, 이봉준,
이상훈, 이소라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
임규호, 임만균, 임종국,
전병주, 정준호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49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이를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9조제2항 중 “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”로 함.
- 나. 제9조제3항 중 “실시여부를”을 “실시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”으로 함.
- 다. 제9조제4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”으로, “나머지 비용은”을 “나머지를”로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시여부를”을 “실시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”으로, “나머지 비용은”을 “나머지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) ① (생략)	제9조(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<u>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</u>
③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<u>실시여부를</u>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실시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</u> ----- ----.
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<u>경우</u>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<u>나머지 비용은</u>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 <u>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</u> ----- ----- <u>나머지를</u>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